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(☎032-560-476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5. 10. 07.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- 결정취지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-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일원
- 면적 또는 규모

○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1-81호선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1	81	20	국지 도로	1,020	광로2-4호선 (가좌동602-8)	광로3-9호선 (가좌동173-387)	일반 도로	-	1988.11.25 (인고 제1406호)	
변경	중로	1	81	20	국지 도로	1,190	광로2-4호선 (가좌동602-8)	광로3-9호선 (가좌동173-191)	일반 도로	-		선형 및 종점변경

○ 도로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중로1-81	중로1-81	○ 선형 변경 ○ 연장(L) = 1,020m → 1,190m ○ 종점변경 - 기 정 : 가좌동 173-387 - 변 경 : 가좌동 173-191	○ 미개설도로의 선형변경을 통해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와 공업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

4. 지형도면 : 게재생략(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, <http://luris.mltm.go.kr/> 열람 가능)